

청림 영등포

부서별 주요업무 보고



자동차관리과

보고 순서

1. 일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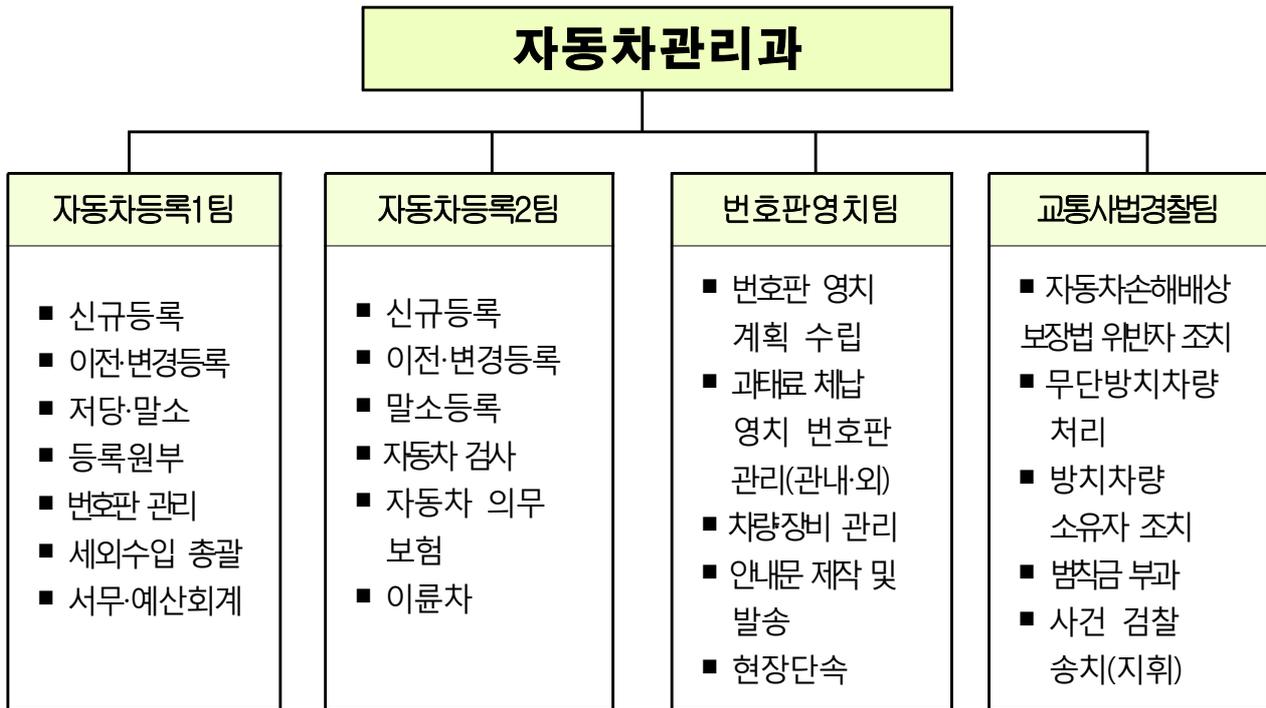
2.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

3.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

I. 일반 현황

■ 기 구 : 4팀

■ 조직도



■ 인 력 : 현원 24명 / 정원 23명

구 분	계	일 반 직				
		5급	6 급	7 급	8 급	9급
계	24/23	1/1	6/6	10/7	3/9	4/0
과부족	1	-	-	3	△6	4

■ 주요시설 및 장비

○ 자동차 등록 및 단속 관련 장비 현황

계	차량	차량번호 판독기	인증기	복사기	프린터(칼라)	팩스	스캔	컴퓨터	통합기
54	2	1	4	2	11(1)	3	1	28	1

■ 자동차 등록 현황

계	승용차	승합차	화물차	특수자동차	이륜자동차
156,580	109,279	6,729	21,745	559	18,268

■ 예산집행 현황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산액	집행액		이월 예상액	예상잔액
		집행액 (10.31기준)	집행예정액 (12.31까지)		
총 계	372,833	253,237	61,249	-	58,347
자동차 관리의영 적법운영	38,434	27,434	5,698	-	5,302
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	55,318	14,385	14,710	-	26,223
법규 위반자 처리	14,328	10,175	2,706	-	1,447
행정운영경비	264,753	201,243	38,135	-	25,375

Ⅱ.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

연 번	사 업 명	쪽
-----	-------	---

- 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4
- ② 과태료 체납자 변호판 영치 5
- ③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자 처리 6

전국 어디에서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의 신규, 이전 및 변경에 관한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과 국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4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업무
- 자동차 등록 현황(2014.10월말 현재) (단위:대)

계	승용차	승합차	화물차	특수자동차	이륜자동차
156,580	109,279	6,729	21,745	559	18,268

□ 추진실적

-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(2014.10월말 현재) (단위:건)

계	신규 등록	이전등록 (명의변경)	말소 등록	변경 등록	압류 등록	저당 등록	등록원부 발급·열람	이륜차	기타
502,064	6,329	31,828	8,303	23,680	151,511	5,135	267,914	5,636	1,728

* 1일 평균: 2,510건/ 기타: 임시운행, 포털민원, G4C민원 등

□ 예산액 : 총 38,434천원 (구비)

예산액	집행액	집행율(%)
38,434	27,434	71.4%

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변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4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개정 이후 발생한 과태료 체납자 중 세목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,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자
- 사업근거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개정(2011. 7. 6.)
 -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상호간 「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」 체결
 - 촉탁비 : 징수금액의 30%

□ 추진실적

- 자동차 변호판 영치(2014.10월말 현재)
 - 대상 대수 : 2,586대
 - 영치 대수 : 512대
 - 총 과태료 징수금액 : 276,242천원
 - 우리구 소관 : 99,525천원
 - 타구 소관 : 176,717천원

□ 예산액 : 총 55,318천원 (구비)

예산액	집행액	집행율(%)
55,318	14,385	26.0%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(운행의 금지)를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를 위반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4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
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

□ 추진실적
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위반자 처리내역(2014.10월말 현재)
(단위:대,천원)

구분	적발 및 접수 내역				처리내역						처리 중
	계	과년도 이월	국토부 통보	타기관 통보	계	범칙금 부과		검찰 송치	자체 종결	타기관 이첩 (이송)	
						건수	금액				
계	1,648	1,010	379	259	853	61	20,500	270	39	483	807
승용차	1,610	979	378	253	819	38	18,200	268	39	474	790
이륜차	38	31	1	6	34	23	2,300	2		9	17

- 무단방치 차량 처리 내역(2014.10월말 현재)
(단위:대,천원)

구분	접수 내역				처리내역				처리 중
	계	과년도 이월	120	전화	계	자진 처리	무등록 폐차	특사경 이첩	
계	271	33	89	149	227	133	65	29	44
승용차	75	12	23	40	63	35	-	28	12
이륜차	196	21	66	109	164	98	65	1	32

□ 예산액 : 총 14,328천원 (구비)

예산액	집행액	집행율(%)
14,328	10,175	71.0%

Ⅲ.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

연 번	사 업 명	쪽
-----	-------	---

- ①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8
- ② 과태료 체납자 변호판 영치 10
- ③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자 처리 11

전국 어디에서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의 신규, 이전 및 변경에 관한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과 구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1.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의 제공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업무

□ 추진내용

- 신규·이전 및 변경등록, 저당, 말소, 이륜자동차 등록
-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, 봉인 및 번호판 교부
- 임시운행 허가 및 기타 경정 등록
- 상속 이전등록 안내
-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확인
-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접수
- 증지수입 처리
- 「민원24」를 통한 등록증 재발급 및 등록원부 발급
-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(<http://www.ecar.go.kr>)을 통한 등록 처리

□ 기대효과

- 선진 자동차 문화의 구현
-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구민 감동 민원 서비스 제공

□ 소요예산 : 총 41,506천원 (구비)

2.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 : 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및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위반 과태료
- 징수목표

계	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	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	비고
656,393	382,591	273,802	

□ 추진내용

- 타기관에서 통보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
-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대상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발송
- 과태료 수시부과 및 미납자에 대한 독촉·체납고지
-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

□ 세부 추진계획

- 2015. 2 : 2015년 자동차관리과 세외수입 상반기 과징계획 수립
- 매월 1 ~ 5일 : 과태료 사전 안내문 발송
- 매월 10 ~ 15일 : 과태료 수시부과 및 독촉·체납고지
- 매월 20 ~ 30일 : 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
- 고액체납자 특별관리: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및 징수독려

□ 기대효과

-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인한 세입증대

□ 소요예산 : 비예산

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 미필차량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개정 이후 발생한 과태료 체납자 중 세목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,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자
- 사업근거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개정(2011. 7. 6.)
 -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상호간 「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」 체결
 - 촉탁비 : 징수금액의 30%

□ 사업추진내용

-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 선정을 통한 사전 안내문 발송
 - 번호판 영치 10일 전 사전안내문 발송
- 3인 1개조 편성 현장단속을 통한 체납차량의 운행제한
- 영치차량의 번호판 관리 및 과태료 징수
 - 체납과태료 납부 시 번호판 반납
 -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 여부 확인 후 번호판 반납

□ 기대효과

-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불법명의자동차(속칭 대포차) 운영을 제한하여 시민 안전 도모

□ 소요예산 : 총 47,837천원 (구비)
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(운행의 금지)를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자와 자동차관리법 제2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를 위반한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관련 법규에 의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. 1. ~ 12. 31.
- 사업대상
 -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8조(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) 위반자 처리
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(방치차량 강제처리) 위반자 처리

□ 추진방향

-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업무 전문화로 구정 행정의 신뢰도 향상
-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세수 증대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

□ 추진절차

- 사건접수(국토부, 경찰서, 타기관 통보분) → 출석요구서 (3회) →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 증거 수집 → 출석자 신문 및 조서 작성(불출석자 소재수사) → 범칙금부과(1회 위반자) 또는 사건 검찰 송치, 타기관 이첩(전출자) → 검사지휘 (기소, 기소중지, 혐의 없음, 공소권 없음, 참고인 중지)
- 방치차량은 신고 접수 즉시 차량 소유자 확인 후 연락처를 통해 자진처리 유도

□ 기대효과

-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업무로 행정의 신뢰감 고취
-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

□ 소요예산 : 총 25,184천원 (구비)